

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63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2. .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 감면 부분과 휴관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자연생태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개정

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
⇒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 조례

나.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(안 제5조)

-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
2천원까지 감면(제3항 삭제) ⇒ 면제(1항4호에 추가)
* 최대 징수액이 2천원이므로 면제와 같음

다.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5조제3항)

라. 휴관일 조정(안 제7조제1항)

- 당초 : 1월1일, 설날, 추석, 매주 월요일
- 변경 : 1월1일, 설날, 추석, 월요일. 다만,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, 국경일의 다음 날

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- (1) 입법예고 (2012. 10. 26 ~ 11. 15)결과 : 의견접수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평가완료
- (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완료
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완료

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충주시 자연생태
체험관 설치와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업무 및 기능)”을 “(업무와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
외의 부분 중 “업무 및”을 “업무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
“그 밖에”로, “시장”을 “충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, “납부하여야”를 “내야”로 하고,
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미 낸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4조제2항 단서 중 “관람자의 책임 없는”을 “자연생태체험관이 책임
져야 할”로, “정지된”을 “정지되었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납부한
자”를 “낸 사람”으로, “교부하여야”를 “발급하여야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관람료의 면제)”를 “(관람료의 면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
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시장은 다음”으로, “자는 관람료의
징수”를 “사람의 관람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출입하는 자”를
“출입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
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또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,
제22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
투표확인증(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)을 제출한 사람

제5조제1항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인정하는 자”를
“인정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 중
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”을 “사람이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면”으로
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

같이 한다.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5조제2항제4호와 제5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의상자 및”을 “의상자와 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그 밖에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 중 “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”을 “필요하면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자연생태체험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휴관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1월 1일, 설날, 추석, 월요일(단,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), 공휴일인 국경일의 다음 날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판단되는 경우”를 “판단할 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7조제2항 단서 중 “인정할 경우에는 이를”을 “인정하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”을 “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휴관할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인한 휴관의 경우”를 “휴관할 때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에 대하여는”을 “사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”을 “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관람 및 이용”을 “관람·이용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원상 복구하거나 실비”를 “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거나 실제 비용을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단서 중 “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”을 “관리·운영에 필요하면”으로, “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”을 “법인·개인에게 위탁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운영하고자 하는”을 “운영하려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반”을 “모든”

으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소요되는 비용의”를 “드는 비용”으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보조금 및”을 “보조금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간 중”을 “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”로, 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”를 “유지하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”을 “변경하려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”를 “법령, 이 조례에 따른 명령·처분,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발생한 경우에는”을 “발생하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11조의 규정 및 위·수탁”을 “제11조 또는 위·수탁”으로, “위반한 경우”를 “위반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판단되는 경우”를 “판단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발생한 경우”를 “발생함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보고 및 검사)”를 “(보고와 검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생태전시관 운영 상태·회계 및 재산”을 “자연생태체험관 운영 상태와 회계·재산”으로, “검사하거나”를 “검사하게 하거나”로, “보고를 하게”를 “사항을 보고하게”로, “사항에 대하여”를 “사항에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7조제1항제1호는 2013. 1.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</p> <p>제3조(업무 및 기능) 자연생태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기타 자연생태체험관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<u>시장</u>이 정하는 사업</p> <p>제4조(관람료) ① 자연생태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<u>자</u>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이미 납부한 관람료</u>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<u>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이 정지된 때에는</u>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</p> <p>③ 관람료를 <u>납부한 자</u>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관람료의 면제) 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u>는</p>	<p>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 조례</p> <p>제3조(업무와 기능) ----- ----- <u>업무와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<u>충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-----</p> <p>제4조(관람료) ① ----- ----- <u>사람은</u> ----- ----- <u>내야</u> -----.</p> <p>② <u>이미 낸 관람료</u>는 반환하지 않는다. ----<u>자연생태체험관이 책임져야 할</u> ----- <u>정지되었을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낸 사람</u>----- ----- <u>발급하여야</u> -----.</p> <p>제5조(관람료의 면제 등) ① <u>시장은</u> <u>다음</u> -----<u>사람의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관람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<u>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</u></p> <p>②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.</u></p> <p>1. <u>충주시에 거주하는 자</u></p> <p>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<u>의한 장애인</u></p> <p>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<u>의한 국가유공자</u></p> <p>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<u>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</u></p> <p>5. 「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</p>	<p><u>관람료</u>-----.</p> <p>1. ----- <u>출입하는 사람</u>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<u>공직선거법</u>」 제2조 또는 「<u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</u>」 제8조, 제22조에 따른 선거에서 <u>투표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)을 제출한 사람</u></p> <p>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 <u>인정하는 사람</u></p> <p>② ----- --- <u>사람이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면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</u></p> <p>2. ----- <u>따른</u> -----</p> <p>3.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</p> <p>4. ----- <u>따른</u> -----</p> <p>5. 「<u>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<u>의상자</u> 및 가족</p>	<p>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----- <u>의상자와</u> 그 ---</p>
<p>③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)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2천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③ 그 밖에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
<p>제6조(판매 시설의 설치) 시장은 관리·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,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판매 시설의 설치) ----- ----- <u>필요하면</u> ----- -----.</p>
<p>제7조(개관) ① <u>자연생태체험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.</u></p>	<p>제7조(개관) ① <u>시장은 자연생태체험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휴관한다.</u></p>
<p>1. 1월 1일, 설날·추석 및 매주 월요일</p> <p>2. 안전 점검이나 개·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</p>	<p>1. 1월 1일, 설날, 추석, 월요일 (단,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), 공휴일인 국경일의 다음 날</p> <p>2. ----- ----- <u>판단할 때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되는 경우</u></p> <p>3. <u>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② 자연생태체험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관람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사람에 대하여는</u>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유아</u> 3. (생략) 4. <u>기타 시설물의 안전 관리와</u> 	<p>3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인정하면</u> ----- -----.</p> <p>③ <u>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휴관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휴관할 때</u>----- -----.</p> <p>제8조(관람의 제한)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사람의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-----

현행	개정안
<p>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<u>관람 및 이용</u>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	<p>----- <u>관람·이용</u>----- -----</p>
<p>제9조(변상 책임)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,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<u>원상 복구</u>하거나 <u>실비 변상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변상 책임) ----- ----- ----- --<u>원래의 상태</u>대로 복구하거나 <u>실제 비용</u>을 -----.</p>
<p>제10조(관리·운영) ① 자연생태체험관은 시장이 직접 <u>관리·운영</u>한다. 다만, 자연생태체험관의 효율적인 <u>관리·운영</u>을 위하여 <u>필요한 경우에는</u> 다른 기관·단체나 <u>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·운영</u>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관리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리·운영</u>에 <u>필요하면</u> ----- <u>법인·개인에게 위탁할</u> ----- --.</p>
<p>② 자연생태체험관을 위탁받아 <u>운영하고자 하는 자</u>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<u>운영하려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위탁 범위 등 <u>제반 사항</u>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<u>의한다</u>.</p>	<p>④ ----- <u>모든</u> ----- ----- <u>따른다</u>.</p>
<p>⑤ 시장은 위탁 사무 수행에 <u>소요되는 비용</u>의 일부를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</p>	<p>⑤ ----- <u>드는</u> <u>비용</u> ----- <u>범위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있다.</p> <p>제11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<u>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자연 생태체험관 운영에 직접 사용</u>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 <u>기간 중</u> 모든 시설물을 <u>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</u>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등을 <u>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</u>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수탁자는 관계 <u>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</u>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.</p> <p>제11조(수탁자의 의무) ① ----- <u>보조금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</u> ----- <u>유지하고</u> -----.</p> <p>③ ----- <u>변경하려면</u>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<u>법령, 이</u> <u>조례에 따른 명령·처분,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<u>발생한 경우에는</u>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수탁자가 <u>제11조의 규정 및 위·수탁에 따른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</u></p> <p>2. 수탁자가 <u>운영 능력이 없다고</u></p>	<p>제12조(위탁의 취소) ----- ----- ----- <u>발생하면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제11조 또는 위·수탁</u>----- <u>위반함</u></p> <p>2.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판단되는 경우</u></p> <p>3. <u>기타</u>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<u>발생한 경우</u></p> <p>제13조(보고 및 검사)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<u>생태 전시관 운영 상태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</u>을 <u>검사</u>하거나 수탁자에게 필요한 <u>보고</u>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나 보고 <u>사항에 대하여</u>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관계 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<u>아니한</u> 사항은 「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」 및 「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을 준용한다.</p> <p>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u>판단됨</u></p> <p>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<u>발생함</u></p> <p>제13조(보고와 검사) ----- ----- <u>자연생태 체험관 운영 상태와 회계·재산</u> ----- <u>검사</u>하게 하거나 ----- <u>사항을 보고</u>하게 ----- ----- <u>사항에</u> ----- -----.</p> <p>제14조(관계 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<u>않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5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.</p>

관 계 법 령

□ 과학관 육성법

제3조(과학관의 구분) 과학관은 그 설립·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국립과학관: 국가가 설립·운영하는 과학관
 2. 공립과학관: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과학관
 3. 사립과학관: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과학관
- [전문개정 2011.6.7]

제10조(관람료 및 이용료)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(이하 "관람료등"이라 한다)를 받을 수 있다.

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,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6.7]

□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

제7조 (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)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1995.4.26, 1997.5.30>

[별표] <개정 2008.12.31>

국·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(제7조 관련)

1. 관람료

구분	금액		비고
	개인	단체(30명 이상)	
어른	4천원	3천원	20세 ~ 64세
청소년	2천원	1천5백원	13세 ~ 19세
어린이	2천원	1천5백원	7세 ~ 12세
노인	2천원	1천5백원	65세 이상
장애인	2천원	1천5백원	
국가유공자	2천원	1천5백원	

비고 :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국립과학관장이 정하고,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